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6. 23 선고 2023가단5102024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완식, 장봉환, 이경훈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6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3. 4.부터 2023. 4. 11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류일건

별지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 관계

원고는 소외 C에게 60,000,000원을 대여한 자이고,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60,000,000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입니다.

2. 사건의 경위

가. 원고의 C에 대한 60,000,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

1) C은 2014. 2.말경 원고에게 "급하게 돈이 꼭 좀 필요하다, 반드시 갚겠다, 한두 달 뒤에 고마움의 표시로 10,000,000원을 얹어 70,000,000원을 갚겠으니, 60,000,000원만 좀 빌려 달라"라고 애걸복걸하였습니다.

2) 이에 원고는 2014. 2. 25. C에게 변제기 한두 달 뒤(2014. 3.말경 내지 4.말경), 이자 10,000,000원으로 하여, 원고의 아내 소외 D를 통해 C이 요청한 소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(계좌번호: (계좌번호 1 생략))로 60,000,000원을 무통장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하였습니다(갑 제1호증, 갑 제2호증의 2 p.2).

나.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원고의 C에 대한 형사고소 접수

C은 변제기(2014. 3.말경 내지 4.말경)에는 물론, 변제기가 한참 지나고 나서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. 원고는 위 무렵부터 계속하여 C에게 수차례에 걸쳐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(갑 제2호증의 1, 2), 이 같은 독촉에도 불구하고, C은 갖가지 변명만을 대면서 차일피일 그 변제를 미루고 변제기의 유예만을 거듭 부탁하였는데, 이후로는 급기야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였는바(갑 제2호증의 1, 2), 이에 원고는 2022. 3. 8.경 마산동부경찰서에 C을 사기로 고소¹⁾하였습니다(갑 제4호증의 1, 3).

1) 형사 고소사건의 사건번호는 '경남마산동부경찰서 F' 입니다(갑 제4호증의 3).

다. 피고의 이 사건 보증서 발급 등

- 1) 그러던 중 C은 2022. 11. 초경 원고에게 연락하여, "2023. 3. 2.까지 (이자는 일단 차치하더라도) 차용금 60,000,000원(원금)은 변제하도록 할 것이고, 만약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보증회사(피고)가 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지급보증하게 하여 보증회사(피고)가 원고에게 위 60,000,000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"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, 다시 한 번 더 변제 유예 합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- 2) 그와 같은 변제 유예 합의가 이루어지기에 앞서, C으로부터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지급보증을 요청받은 피고는 2022. 11. 3.경 "채무자: C, 보증처: 원고, 보증금액 : 60,000,000원, 변제기 2023. 3. 3.²⁾" 등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한 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였습니다(갑 제3호증).
- 3) C은 2022. 11. 16. 원고에게 위 보증서를 교부하였고, 이에 같은 날 원고와 C 사이에 변제 유예 합의가 이루어졌으며, 원고는 2022. 11. 30. 마산동부경찰서에 위 변제유예합의서 및 그 첨부서류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(이상 갑 제4호증의 2).

라.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지급의무 불이행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청구

- 1) C이 2023. 3. 2.까지 원고에게 60,000,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, 이에 2023. 3. 3.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지급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바, 원고(내지 원고의 소송대리인)는 2023. 3. 3.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보증채무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.

2) 위 보증서의 보증채무 이행시기란에는 '보증채무는 채무자(C)가 채무(60,000,000원)를 보증처(원고)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(2022. 11. 3. ~ 2023. 3. 2.) 만료일 경과 후에 이행 청구할 수 있다'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(갑 제3호증), 보증채무금 변제기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(2023. 3. 2.) 다음날인 2023. 3. 3.에 도래하였습니다.

2) 하지만, 피고는 원고에게 "C이 2023. 3. 22.까지 원고에게 60,000,000원을 지급한다고 하니, 기다려라"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, 이 사건 보증채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

3) 그 후로도 원고(내지 원고의 소송대리인)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채무금을 지급해줄 것으로 청구하였으나, 피고는 원고(내지 원고의 소송대리인)에게 계속하여 "기다려라", "알아보고 다시 연락해주겠다"라는 취지의 말만을 되풀이하였고, 그러면서도 연락을 해주지 않기 일쑤였으며, 급기야 최근에는 원고(내지 원고의 소송대리인)의 연락조차 피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채무금을 지급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바, 이런 경위로,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보증채무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.

3.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청구

이처럼,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60,000,000원 상당의 채무를 보증하였고, 그 변제기(2023. 3. 3.)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60,000,000원 상당의 이 사건 보증채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,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채무금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23. 3. 4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³⁾

4. 결론

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오니, 부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) 주식회사인 피고의 이 사건 보증은 상행위인바, 상법 제57조 제2항(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)에 따라,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,000,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을뿐더러, 상법 제54조(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)에 따라, 그에 대한 연 6%의 상당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